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974호
2. 발 의 자 : 임종국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8. 7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학교, 유치원 및 학원 등 서울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·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·조성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적용범위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함(안 제6조제3호).

IV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7일 임종국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74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·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·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18일,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 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¹⁾이 적용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(이하 ‘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’)」를 제정하였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은 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공·사립학교의 ‘교육시설 및 건축물’로 규정(제6조제1호 및 제2호)²⁾되어 있어,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어린이

1) 유니버설디자인(Universal Design: UD)은 장애·연령·성별·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., 행정안전부(2018).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 책자.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」

제6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·공간 등에 적용한다.

1.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과 건축물 중 「건축법」제2조에 따른 건축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·대수선·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
2.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·대수선·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

놀이시설³⁾은 동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

-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서울시내 유치등학교 및 학원 등에 총 1,232개 설치되어 있고, 서울시교육청은 이 시설물을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유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이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건축물 등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교육공간으로서 중요한 시설인바,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장애·연령·성별 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

구분	유치원	학교(초등+특수)	학원	전체
공립	169	637	0	806
사립	325	64	37	426
계	494	701	37	1,232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·공간 등
 3) 행정안전부(2018).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 책자.

나.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조례 적용범위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 제2조제2호4)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(안 제6조제3호)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그 적용범위가 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, 공사립 유치원 뿐 만이 아닌 ‘학원’ 까지 포함되게 됩니다.
- 하지만 동 조례 제1조(목적)에서는 ‘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’에 한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‘학원’의 어린이놀이시설까지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동 조례 제6조제2호는 ‘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·대수선·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’로 규정하고 있어, 사립학교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중 재정지원을 받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립학교 중 수업료 자율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사립초 등 별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 지침에 따라 시설사업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5).

4) 「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략.
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2]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.

3. 생략.

5) 서울시교육청(2023.6.).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립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유니버설디자인 준수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안 제6조제3호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동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기존 유지되는 시설이 아닌 ‘교육시설 및 건축물 중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을 하는 교육시설’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동 조례가 기존의 교육시설 등을 유니버설디자인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, 향후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, 대수선,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토록 하는 것인바,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각 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을 ‘신설 및 교체’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사업 추진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수업료자율학교 및 학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81.8.22.)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 2180-8263	입법조사관	이가영 2180-8270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